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비상진료체계(당직전문의 제도)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계도기간
연장 안내

1. 우리부 응급의료과-3232(2012.8.3.)호 및 4905(2012.11.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에서는 공휴일과 야간에 응급환자 진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공포('12.8.3) 이후,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 12.8.5.~11.4)하고 행정처분을 유예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그 간 비상진료체계(당직전문의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내용 및 운영현황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응급의료체계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동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계도기간 연장기간 : '12. 11. 5(월). ~ ' 13. 2. 28(목).

나. 내용

1) 비상진료체계(당직전문의 제도) 관련 개정 사항은 '12. 8. 5.부터 시행 되므로, 응급환자를 차질없이 진료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 철저

2) 비상진료체계(당직전문의 제도) 관련 개정사항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은 계도기간 연장기간 동안 유예. 끝.



보건복지부 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의료정책과장), 부산광역시(보건위생과장), 대구광역시(보건정책과장), 인천광역시(보건정책과장), 광주광역시(건강정책과장), 대전광역시(보건정책과장), 울산광역시(보건위생과장), 경기도지사(보건정책과장), 강원도지사(식품의약과장), 충청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식의약품안전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의료과장), 전라남도지사(보건한방과장),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과장), 경상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위생과장), 국립중앙의료원장, 소방방재청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중소병원협의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대한의학회장

보건사무관 ★ 응급의 2012. 11. 2.
관 구성자 료과장 정은경

협조자

시행 응급의료과-4912 (2012. 11. 2.) 접수

우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곡로(가회동) 75 현대빌딩 보건복지부 / <http://www.mw.go.kr>
8층 응급의료과

전화번호 02-2023-7337 팩스번호 02-2023-8924 / jakoo@korea.kr / 대한민국 공개

도와줘요 고마워요 희망의 전화 129